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4
----------	----

2014년 1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9월 5일, 김현아·김경자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
- 다. 상정결과 :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3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경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 단위 학교에서의 영어 및 제2 외국어교육의 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향적인 운영 및 부모의 경제적 소득격차 그리고 지역별 교육학습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어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 및 지역 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함.

나. 주요내용

-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함(제3조제3항제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 태 식)

가. 교육지원기본계획 내용에 외국어 교육격차 관련 근거 신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교육지원기본계획”)’의 내용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서울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200여 곳의 수능시험점수 205만 5천여건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 간 교육성과의 차이가 가장 큰 과목은 영어로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¹⁾
- 한편,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교육도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균등한 학습기회 부여가 요망되는 실정이라고 하겠음.
- 2014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317개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 편성(복수 편성 포함) 현황을 보면, 일본어 개설학교가 263개로

1) 정재훈·김경민, 교육의 공간 불평등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4, pp.385-401. : 연구 결과, 자치구별 영어 성적 1위는 강남구이며 최하위는 금천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어 성적의 불평등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임.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가 223개로 나타나 중국어와 일본어 선택 비율은 약 85.8%에 달하는 반면, 제2외국어 과목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채택한 학교는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편성 현황(2014학년도 입학생 기준)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합계
해당 제2외국어 선택수 (복수 선택 포함)	27개	47개	6개	223개	263개	566개
해당 제2외국어 선택 비율	4.8%	8.3%	1.1%	39.4%	46.4%	100%
	14.2%			85.8%		

-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포괄적 규정(제7호,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의해서도 '영어 및 제2외국어 관련 교육격차 해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금번 개정안과 같이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외국어 관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7호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정수 규정을 수정함.

나. 주요내용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중 시의원 정수를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4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3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정수 규정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중 시의원 정수를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을 “시의원 3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 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p> <p>④ ~ ⑤ <생략></p> <p>제12조 (위원회 구성 등)</p> <p>① (생 략)</p> <p>1. -----</p> <p>-----</p> <p><u>관련 상임위원회</u> <u>시의원 2명</u></p> <p>-----</p> <p>-----</p> <p>-----</p> <p>-----</p> <p>-----</p> <p>-----</p> <p>2.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6. <현행과 같음></p> <p><u>7.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 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u></p> <p>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 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6. <현행과 같음></p> <p><u>7.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 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u></p> <p>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 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위원회 구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p> <p>-----</p> <p><u>시의원 3명</u> -----</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제3조제3항제8호로 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을 “시의원 3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p> <p>④ ~ ⑤ <생략></p> <p>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p> <p>1.-----</p> <p style="text-align: center;">----- <u>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u></p> <p>-----</p> <p>-----</p> <p>2.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6. <현행과 같음></p> <p>7. <u>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u></p> <p>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1.-----</p> <p style="text-align: center;">----- <u>시의원 3명</u></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